

예탁증권담보용자 설명서

(주식 및 매도증권 등)

(2024. 11. 20)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탁증권담보용자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예탁증권담보용자**는 고객님의 계좌에 예탁된 상장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을 담보로 용자를 하여드리는 거래를 말합니다.
-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을 활용하여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예탁증권담보용자금 사용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매도증권담보용자**는 고객님의 계좌에 결제 증권을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자를 하여 드리는 거래를 말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 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 <은행 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예탁증권담보용자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종목별,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예탁증권담보용자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 ↳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예탁증권담보용자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예탁증권담보용자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용자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Q2.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 Q4.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90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 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주식 담보 1천만원, 예탁증권담보용자금 60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600주 매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 반대매매 절차

(D일) 담보유지비율 하회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 (D+1)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2) 반대매매 실행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매수	10,000원	16,000,000원	266%	담보주식 및 매수주식 평가금 / 용자금
D일	5,000원	8,000,000원	133%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5,100원	8,160,000원	136%	추가담보 미납 (24만원 담보부족)
D+2일	반대매매 실행 (S, A, B 종목군 전일종가의 -15% 적용 가정) $* \text{반대매매 수량} = \frac{8,160,000 - (6,000,000 \times 1.4)}{5,100 - (4,335 \times 1.4)} = 248$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용자금

☞ (S, A, B종목군 반대매매의 경우) 전일종가(5,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4,335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248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248주)이 5,1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126만원(248주×5,100원)으로 담보부족 금액(24만원)의 5.3배 수준**

☞ (C, 불가등급종목군 반대매매의 경우) 전일종가(5,1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하한가, 3,5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6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가 5,1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816만원(1,600주×5,100원)으로 **투자원금(1,000만원)의 상당부분(18%)에 달하는 손실(184만원)**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nkfn.co.kr>) 또는 고객센터(1577-2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 고객

- 개인 및 법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등 불가)
↳ 담보부족계좌, 위탁증거금 면제계좌, 당사 특수관계인, 연락처 미등록자, 반송계좌 등 해소 후 가능

나. 예탁증권담보용자 대상 종목

- 가) **증권시장 상장주권** (주권 관련 증권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포함)
(단,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
- 나) 채권
 - 상장채권
 -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 특수채, 은행채, 금융기관채 및 회사채 : 2개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중 회사가 선정한 채권(ABS는 제외하며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는 포함)
- 다) 집합투자증권: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MMF. 단, 신탁수익증권, 단위형 집합투자증권, 사모형 집합투자증권, 중도해지 또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폐쇄형 집합투자증권)한 경우 제외
※ 예탁증권담보용자 대상종목 확인 방법 : HTS 또는 MTS 참조
- 라) 매도증권
 - 결제가 완료된 증권을 매도 (전일 매도 포함) 한 경우 대출 가능 (미결제된 증권을 매도한 경우 대출 불가)

다. 예탁증권담보용자 용자비율

구분	등급	용자비율	구분	유형	용자비율
주권	S, A 종목	65%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혼합형	50%
				채권형, MMF	70%
	B, C 종목	55%	채권	-	50%

※ 매도증권담보용자의 경우 98%

라. 용자한도

- 고객별 한도 : 20억원 (심사를 통하여 증액 가능)
- 종목군별 한도 (심사를 통하여 증액 가능)

구분	S종목군	A종목군	B종목군	C종목군
주권	25억원	20억원	15억원	5억원

마. 담보유지비율

- 담보유지비율 : 140% (임의상환 담보유지비율 130%)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바. 용자기간

- 90일 (90일 단위로 연장가능)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매도증권담보유자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이며 중도상환 및 연장 불가합니다.

사. 담보유지비를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130%~140% 미만	추가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130% 미만	추가담보요구일 당일 이내

아. 이자율 및 징수일 등

- 이자율 적용기준

구분	S, A 종목군	B 종목군	C 종목군	매도증권	채권 및 펀드	연장시
이자율	연 7.50%	연 8.00%	연 8.50%	연 7.50%	연 7.50%	연 8.50%
연체이자율	연 9.50%					

- 이자 징수일
 - (정기) 매월 첫 영업일/(수시) 매매상환시 결제일, 입금상환시 상환일
 - 매도증권담보유자의 경우 매도결제일에 이자 징수

- 이자율 적용방식
 - [체차법] - 용자기간별 일수에 대하여 해당 이자율 적용**

<예시> 예탁증권담보유자금액 B종목군 담보 1천만원, 용자기간 100일 가정 시

- ※ 계산식 : 예탁증권담보유자금액 X 종목별 기간별 이자율 X 예탁증권담보유자 사용일수/365일
☞ (총이자금액) 1천만원 X {8.00% X 90일 + 8.50% X 10일} / 365일 = 220,547원
* 기타 당일 용자 후 당일 상환 시 이자 미발생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예탁증권담보유자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이 (0.4491639%) 적용**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예탁증권담보유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 담보설정된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 용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HTS 및 MTS), 유선 상으로 신청 가능
-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17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 회사는 **예탁증권담보유자 시 증권**(증권예탁증권 포함) 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매도증권담보유자 시에는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 (종목등급별 반대매매 수량계산 및 주문 기준가격)
 - (S, A, B 종목) 전일종가의 -15%
 - (C, 불가등급 종목) 전일종가의 -30%
 - √ 예탁증권담보유자 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bullet \text{ 반대매매 수량} = \frac{\text{담보평가금액} - (\text{융자금액} \times \text{담보유지비율})}{\text{전일종가} - (\text{반대매매 기준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채무 총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총당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총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9.50%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용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 「용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용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용자기간 및 연장사항

- ☑ 기간 : 90일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7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용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의 위험성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는 레버리지 거래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공여 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대출비율이 60%인 경우 1,000만원의 주식을 가지고 600백만원을 용자, 총 1,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66%(=1,600÷600×100)임
→ 매입후 하한가에 마치고 익일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상회하게 됨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예탁증권담보유자 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예탁증권담보유자 상환기일이 경과된 거래가 있는 고객**은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 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예탁증권담보유자 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예탁증권담보유자 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공여 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내방 및 우편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증권담보용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예탁증권담보용자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② 예탁증권담보용자금 미상환시,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 금액 미납시 등의 경우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③ 연체 시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공여 거래 신규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주식회사 (주)BNK투자증권과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탁증권담보용자 거래의 [주요 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77-260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nkfn.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직원 확인]

• (BNK투자)증권 ()지점 (직책) _____ (은)는 상기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_____, 홈페이지 www.bnkfn.co.kr)

20 . . . (서명 또는 인)